

[별표 23]

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
(제75조제1항관련)

|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|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포수용액 방사차    |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,000 L 이상일 것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0만 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|
| 분말 방사차      |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,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                |
| 할로겐화물 방사차   | 할로겐화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할로겐화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1,000kg 이상의 할로겐화물을 비치할 것                |
| 이산화탄소 방사차   |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3,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              |
| 제독차         |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          |